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402 호 2023. 5. 18.(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91회[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92회[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93회[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94회[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95회[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96회[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97회[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98회[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26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99회[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39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00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01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48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02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4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67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18회[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5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34회[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 80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94회[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82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704회[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 공청회 개최 공고]..... 8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710회[주케이엔 공장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8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712회[행정대집행 계고서]..... 95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5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을 “구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자문,”으로 하고, “지역발전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로, “운영지원”을 “운영”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위원회의 설치)”를“(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을 “정책자문과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으로 하며, “지역발전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2.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 등 전문분야에 관한 자문
3.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5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복구의회 의장이”를 “복구의회에서”로 한다.

-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위원의 임기)”를“(위원의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으로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제10조 중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를 “기획예산과장이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구정발전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구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제안과 자문 역할을 추가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구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정책자문으로서 역할 확대(제1조, 제3조)
 - 구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자문 추가
- 위원회 정책자문 기능 강화(제4조)
 -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 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 등 전문분야에 관한 자문 등
-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제5조, 제10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5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92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설치 및 구성)”을 “(지역회의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동장”을 “구청장”으로, “동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회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위원회”를 각각 “지역회의”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2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역위원회”를 각각 “지역회의”로 하고, 같은 항 중 “실제 비용”을 “실비 및 수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마을축제”를 “마을축제,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등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선정에 있어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의 역할중복을 일원화하여 '주민자치회'가 '지역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고, '동 지역위원회'의 명칭을 '지역회의'로 변경함으로써 주민 의견 수렴 활성화 기능 강화하며,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인 요인으로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역할(주민제안사업 발굴, 선정)을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도록 규정(제19조)
-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 명칭 변경(제19조, 제21조, 제29조)
 - (당초) 동 지역위원회 → (변경) 지역회의
-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마련(제29조)
 - (당초) 실제 비용 → (변경) 실비 및 수당
-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주민총회 안전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 등 추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5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93호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로 한다.

제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우리 구 기업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제5조의2)
-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추가(제5조제4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제4조, 제9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5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9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연 1회”를 “2년마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상후보자 추천기준 강화) 구민대상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상 후보자의 추천 기준을 강화한다.

1. 직전 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후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동일한 공적으로 재추천 불가
2. 추천 대상자의 공적사항 중 본인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추진된 공적 또는 공직자의 경우 공직 기간 내 관련 업무에 대한 공적사항 추천 제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구민대상 시상 시기를 격년제로 변경하고, 수상 후보자 추천기준을 강화하여 분야별 대표성을 갖춘 구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상 시기 변경 (제2조제2항)
 - (당초) 연 1회 → (변경) 격년(2년에 1회)
- 수상 후보자 추천기준 강화 조항 신설 (제4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5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95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9란 다음에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천곡동 914-2, 914-5, 914-9~10, 954-1~2, 954-6. 955, 955-1, 1024-71, 1100, 1100-1, 산151-9~12, 산152-1, 산153, 산153-2, 산154-1, 산154-4, 산155, 산155-2번지(54,270제곱미터)를 달천동으로 편입한다.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모바일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천곡동과 달천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천곡동 23필지(54,270㎡)를 달천동으로 편입(별표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5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96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위치)”를 “(명칭 및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 1길 10-3(양정동)에 둔다”를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2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북구생활문화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 1길 10-3(양정동)
2. 송정생활문화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89(화봉동)

제7조제2항 중 “ 「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 규칙」 ”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7.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제8조제2항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12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 「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 규칙」 ”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으로 한다.

제18조 중 “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를 “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생활문화센터(송정생활문화센터)가 추가 건립되어 2023. 5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향후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송정생활문화센터 위치 추가(제2조)
 - 송정생활문화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89(화봉동)
- 준용 규정 현행화(제7조, 제14조)
 -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 (변경)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대상 일부 변경 및 추가(제8조)
- 시설사용료 부과 대상 공간명칭 변경(별표)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제8조, 제12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민
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5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97호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
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
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
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
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원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

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2. 7. 11. 개정, '23. 4. 1. 시행)되어 '민원실의 운영'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3조)
- 민원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제4조)
- 민원실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제5조)
- 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제6조)
-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제7조)
-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제8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5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98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

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지역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관할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척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7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8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9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

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탄소흡수원등의 확충)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24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적응대책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해야 한다.

제25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6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을 지

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제28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련기관, 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구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등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0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79조 및 영 제7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 소관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1조(포상)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 9. 24, 시행 ’22. 3. 25.)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2021. 9. 24.폐지

2. 주요내용

- 목적, 구청장·사업자·구민의 책무 등(제1조 ~ 제6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법정계획 등(제7조 ~ 제9조)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제10조 ~ 제17조)
- 온실가스 감축 시책 등(제18조 ~ 제25조)
- 탄소중립 지역사회의 이행과 확산 등(제26조 ~ 제31조)
-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5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9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설치 및 기능)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 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
(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및 해촉) 위촉직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평가단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이하 “평가단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

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및 연수 등
2. 기술인 보수교육 중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③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또는 인근 시·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울산광역시 또는 인근 시·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응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9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경비지원) 본부장은 평가단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험도 평가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 앞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사 진

소 속: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052-241-0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험도 평가 절차·방법 등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조항 변경 및 삭제
-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역할 명확화(제2조)
- 위험도 평가단원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평가단 구성 근거 명시(제3조)
- 위험도 평가단원 명단 및 비상연락망 관리 의무화(제5조)
- 평가단원 교육·훈련 확대(제6조)
-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관련 정보 사전 알림(제7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의
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5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0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재정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임기개시”를 “의원의 임기개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2023년 1월 1일자 울산광역시 북구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획조정실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제3조제2항제2호)
-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화(제5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5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0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로 의정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과 구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연구용역비”란 연구단체가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하기 위해 조사, 연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를 선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등록·폐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대표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를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를 폐지할 때에는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등록·폐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운

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7조(심의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활동비 지원
5. 그 밖의 연구단체 지원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제8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9조(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의 지원경비는 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2.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와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등 기타 필요경비

②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연구용역 수행) ① 연구단체는 특정한 정책연구 과제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제안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연구단체는 연구용역 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가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과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용역과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기타 전문가집단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심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심사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대표에게 통지한다.
- ⑦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 ⑧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 관으로 한다.

제12조(용역과제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연구단체에서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적절성
2. 과업내용의 적절성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3. 연구용역의 활용가능성 및 활용계획

제13조(연구용역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의 구성인원 및 용역주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② 연구용역비는 심사위원회의 승인 의결 후 용역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회사무과에서 지급한다.
- ③ 연구용역비는 연구단체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연구 등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며, 의원 개인에게 지급은 불가하다.

제14조(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대표는 매년 11월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20일 전까지로 한다.

제15조(연구활동 결과 관리) 의장은 연구결과 보고서를 북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북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청한 연구단체의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등록·폐지) 신청서

1. 연구단체명:
2. 연구목적:
3. 구성원 인적사항

구분	성명	소속 상임위원회	서명·날인	비고
대표				
회원				
회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등록·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활동 계획서

구분	내 용
연구단체명	
연구과제명	
주요내용 요약	
연구활동비	원
기타사항	

※ 의원연구활동 세부계획서(비용산출·집행계획 포함) 첨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1. 연구단체명:
2. 변동사항

구분	변동내역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당초	변경		

※ 의원연구활동 변경 계획서(필요 시) 첨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보서

년 월 일

구 분		내 용			
연구단체 등 록	단체명				
	대표자				
	등록적격여부	적격		부적격	
	부적격사유				
연구과제	과제명				
	과제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사유				
연구경비 지 원	총액				
	세부내역	「세부내역 불임」			
기 타 사 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의 회 운 영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제안서

연구단체명 : ○○○○ 연구단체 대표 ○○○

용역개요

- 용역명 :
- 용역기간 :
- 용역비 :

필요성

-
-

과업내용

-
-
-

용역결과 활용

-
-

지금까지 추진상황

-
-

향후 추진계획

-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연구단체명		
용역 내용	용역과제	
	용역목적	
용역 내용 및 추진계획		
용역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별 첨 : 구체적으로 기술)
성과물 활용계획		

※ 과업지시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첨부

년 월 일

대표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 신청서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인)	
변경내용	당초	
	변경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기타		

※ 정책연구용역 변경 내역서 첨부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사결과 통보서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의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연구과제명	
심사·의결내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용역과제심사위원장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구분		주요내용
연구단체명		
연구과제명		
연구목적		
연구결과 요약		
연구 활동비	지원액	원
	집행액	원
	잔액	원
기타사항		

※ 연구결과 세부내용(비용 세부집행내역 포함) 첨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 의원연구단체 등록 등에 관한 심의 사항 규정(제5조~제7조)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제9조)
- 정책연구용역 수행 및 심사에 관한 사항(제10조~제12조)
-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제13조)
-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 및 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제14조~제15조)
- 의원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제1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5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0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사주무관”을 “의정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인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촉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신설(제4조제4항)
- 심사위원회 간사 변경 : 의사주무관 → 의정주무관(제6조제2항)
-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 삭제(제8조)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경희

2023년 5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3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를 “지역구·비례대표별 의원성명 가나다”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본회의는 의장이 허가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의원은”을 “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은”으로, “가진다”를 “가진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임기개시”를 “의원의 임기개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16조제1항 후단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7조 후단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회기 시작일”을 “회기 시작 10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2제3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을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②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임시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선거
2. 위원 선임
3. 의장 또는 부의장 불신임

4.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
5. 회기 중 제출된 의원사직 허가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7. 회기 변경
8. 휴회 또는 폐회
9. 구청장의 본회의 출석요구
10. 구청장의 재의요구
11. 회의록 기재사항 또는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
12. 위원회 제출의안. 다만, 제5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행정사무조사 발의
14. 결의안 및 건의안. 다만, 전문적 심사가 필요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15. 그 밖에 의장이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28조제1항 본문 중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듣고 질의·토론”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34조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36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44조 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를 “거수·기립 또는 전자투표”로 한다.

제47조제3항 단서 중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56조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한다.

제59조제4항 중 “아니하는 사람이어야”를 “않는 사람이어야”로, “아니하는 한”을 “않으면”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후단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을 “의장”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는”을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예산결산위원회”를 “예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를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협의사항이 통지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해당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로 한다.

제70조 중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를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9조제2항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낭독 하는”을 “낭독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게”를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아니하기로”를 “않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장내”를 “회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89조의3제3항 본문 중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90조제3항 단서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한다.

제92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3조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의장단 후보자 등록 시 의원당선인을 포함하고 중복 등록을 방지하여 선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 나.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등 의회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의석배정 순서 명확화(안 제3조제2항)

- 나. 청가 허가권자를 의장으로 통일(안 제7조제2항, 제7조제4항)
- 다. 후보자 등록 대상에 의원당선인 포함 및 중복 등록 방지 관련 후단 신설(안 제8조제6항)
- 라. 의장단 임기 명확화(안 제9조제2항)
- 마.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제출기한을 10일 전으로 변경(안 제19조제2항)
- 바.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안건 명시(안 제20조제2항 신설)
- 사. 본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현행에 맞게 삭제(안 제28조제1항)
- 아. 표결 방법에 거수·기립 추가(안 제46조제1항)
- 자. 예산안 심의 절차를 현행에 맞게 수정(안 제69조제1항)
- 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 변경 방법 변경(안 제69조제5항)
- 카. 예산안 수정동의 방법 변경(안 제70조)
- 타. 징계 요구 시 본회의 부의시한 삭제(안 제92조제1항)
- 파. 기타 조문 정비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5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洞** 주민자치위원회”를 “**동**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 개**”를 “**여러 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되**”를 “**따르되**”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3회에 한하여”를 “세 차례만”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가입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주 소			
직 장 및 전 화 번 호	직장명:	직위:	
	☎ 직장 :	주택 :	휴대폰 :
E-mail	※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주 요 경 력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및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 타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복구인 신청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주 소			
신 청 분 야	동 주민자치회 추천(), 시민·사회·기능단체 등 추천()		
	거주지 동명		
	추 천 단 체		
직 장 및 전 화 번 호	직장명:	직위:	
	☎ 직장 :	자택 :	휴대폰 :
E-mail	※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주 요 경 력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및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 타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복구인 신청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위 사람을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 주민자치회장(○○단체·기관의 장)-직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8개동 전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안 제3조, 별지 제2호서식)
 - (당초) 주민자치위원회 → (변경) 주민자치회
-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경희

2023년 5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훈령 제3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 상위법령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94호

하천점용 허가(협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67 (초량동)		
점용 위치	울산광역시 복구 천곡동 1162	하천의 명칭	천곡천
점용 내용	공사용 가도 설치(B=6m, L=60m)	점용 면적	670m ²
점용 기간	2023. 5. 12. ~ 2024.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704호

- 울산광역시 복구 경관계획 재정비(안) - 공청회 개최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3년 5월 1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최목적

울산광역시 복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

2. 개최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3. 6. 1. (목) 14:00 ~ 16:00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복구청 2층 대회의실

3. 울산광역시 복구 경관계획 재정비(안) 개요

가. 공간적 범위 : 울산광역시 복구 관내 전역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2년, 목표연도 2035년

다.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복구 경관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재정비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분석

3) 경관기본계획 및 부문별 계획 재정비

4)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재정비

5) 경관 가이드라인 보완 및 경관 시범사업 제안 등

4. 의견 제출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분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거나, 공청회 개최 후 제출기한 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6. 1.(목) ~ 6. 7.(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1) 방 문 : 울산광역시 북구청 2층 도시과
- 2)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도시과(연암동, 북구청)
- 3) 팩 스 : 052-241-7909
- 4) 이메일 : jihee0601@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출서

성명		연락처	
주소	()		
의견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6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710호

(주)케이엔 공장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기간 : 2023. 5. 15.(월) ~ 2023. 5. 22.(월)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p>가. 사 업 명 : 효문동 (주)케이엔 공장 시설 신축공사</p> <p>나. 사업주체 : (주)케이엔</p> <p>다. 시 공 자 : 태산건설주식회사</p> <p>라. 설 계 자 : 건축사사무소 초석</p> <p>마. 감 리 자 : 탐 건축사 사무소</p> <p>바.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1032외 1필지 ○ 대지면적 : 13,864.1㎡ ○ 연 면 적 : 14,311.05㎡ ○ 규 모 : 1동 지상3층 ○ 세 대 수 : ○ 공사기간 : 23년05월~23년11월 ○ 허 가 일 : 23년02월22일 ○ 착공신고수리일 : 23년05월 ○ 공 사 비 : 오십구억원정 (₩5,900,000,000) <p>사. 안전점검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비용 : 사백만원 (₩4,000,000) 	<p>○ 기초금액 : 원</p> <p>○ 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 평균금액</p>

3. 안전점검 내용

가. 수행예정표

항 목	횟 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	2,000,000	4,000,00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7]안전점검대가요율
계	2	2,000,000	4,000,000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3. 5. 15.(월) 17: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3. 5. 22.(월) 11: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3. 5. 22.(월) 12: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바. 유의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6.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3. 5. 22.(월) 11:00까지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열람.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3. 5. 23.(화) 18:00까지(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2) 자기평가표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자기평가표를 말함
- 3) 참여기술인의 최근 7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7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28호\(2021. 3. 8.\)](#) 우리 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등록한 업체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심사기준 : 지정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
(공고일 포함)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아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circ \text{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p>*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p>

<p>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p>	<p>60점</p>	<p>○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p> $* \text{평점} = 6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p>*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p>
<p>합계</p>	<p>100점</p>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함.**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지정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5)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 ~ 3순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

오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 사.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 아.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차.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중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당일까지도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5)로 문의바랍니다.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①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④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⑤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348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에서 발주(인·허가 사항 포함)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모집을 실시하고 그 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3월 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 건축4, 종합2

연번	수행기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분야	비고
1	산업안전관리(주)	윤영만	제174호	종합	
2	오름구조안전기술원(주)	박대준외1	울산 제14호	토목(항만), 건축	
3	(주)하이콘엔지니어링	신상훈	울산 제10호	건축	
4	(주)세명구조엔지니어링	강경원외1	울산 제5호	건축	
5	(주)오에스엔지니어링	한진원	제274호	건축	
6	(주)대흥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정태석	울산 제24호	종합	

1.3 전체 공정표

구분	전체 공정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2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3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4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5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6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7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8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9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10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11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12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 본 공사(역)의 공정표(역)는 본 공사(역)의 안전관리계획(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제2023 - 71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3년 4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584호로 귀하의 국유지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2023년 4월 30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3년 5월 24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48조, 「소하천정비법」 제16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불법행위	면적	대집행 방법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770-3번지	경작	100㎡	원상회복

2023년 5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제2023 - 71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3년 4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584호로 귀하의 국유지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2023년 4월 30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3년 5월 24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48조, 「소하천정비법」 제16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불법행위	면적	대집행 방법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1092번지	경작	30㎡	원상회복

2023년 5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제2023 - 71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3년 4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584호로 귀하의 국유지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2023년 4월 30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3년 5월 24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48조, 「소하천정비법」 제16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불법행위	면적	대집행 방법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669-2번지	경작	60㎡	원상회복

2023년 5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제2023-71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3년 4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584호로 귀하의 국유지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2023년 4월 30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3년 5월 24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48조, 「소하천정비법」 제16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불법행위	면적	대집행 방법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95-173번지	경작	5290㎡	원상회복

2023년 5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복구 제2023 - 71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3년 4월 20일,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584호로 귀하의 국유지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2023년 4월 30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3년 5월 24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48조, 「소하천정비법」 제16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불법행위	면적	대집행 방법
울산광역시 복구 화봉동 1587번지	경작	2180㎡	원상회복

2023년 5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제2023 - 71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3년 4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584호로 귀하의 국유지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2023년 4월 30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3년 5월 24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48조, 「소하천정비법」 제16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불법행위	면적	대집행 방법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17번지	경작	330㎡	원상회복

2023년 5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제2023 - 71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3년 4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584호로 귀하의 국유지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2023년 4월 30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3년 5월 24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48조, 「소하천정비법」 제16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불법행위	면적	대집행 방법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산 113-1번지	경작	1110㎡	원상회복

2023년 5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